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4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서영교·박희승·임오경

박지원 • 이훈기 • 윤준병

위성곤 · 임호선 · 이해식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는 포항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 올해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등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	③
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	
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	
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	
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	
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	
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율을 <u>2024년 12월 3</u>	<u>2027년 12월 3</u>
<u>1일</u> 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	<u> 1일</u>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	
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